

부속서 I

관세 양허표

중국

두주

1. 이 양허표는 아세안 회원국, 호주, 일본,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에 대하여 각각 적용 가능한 5개 절로 구성된다.
2.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식으로 표현된다. 이 양허표의 호 및 소호의 품목명 및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에 의하여 규율된다.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,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율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
3.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“U” 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.